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을 위하여 기능직·별정직·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기능직·별정직·계약직 직종전환 (정원의 총수 3,118명 : 변동없음)

구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
계	증194 (1,223→1,417)	△186 (186→0)	△8 (20→12)
기능직→일반직	186	△186	-
별정직→일반직 ※전문경력관 9명 포함	12	-	△12
일반직(계약직)→별정직 ※비서 및 보좌관	△4	-	4

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업무의 유사성, 인사관리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·간소화하는 것임.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직종별로 보면,
  -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고,
  -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(비서·비서관 등)으로 재분류하며,
  -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(임기제)과 별정직(장관, 정책보좌관 등)으로 재분류하며,
  - 또한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(임기제공무원)하거나, 대체 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(전문경력관)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한 것임.
- 본 조례개정안은 직종개편으로 세분화된 직종체계가 간소화되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직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음.
- 다만,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전문경력관의 “직무군”을 “직위군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 제4조 또한 동일하게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▶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<u>직급별 정원(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</u> 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<u>직급별 정원(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)</u> 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